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526931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국제협력단

피 고 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5. 9. 23.

판결 선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4,4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3.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4,4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선금금 반환의무를 보증한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 사실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공사계약의 체결

1)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라 한다),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금광'이라 한다),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도화'라 한다)은 원고가 발주하는 필리핀 농업용수확보 및 홍수피해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사는 한라로 하고, 한라는 시공부문 중 51%(파사 댐 부분), 금광은 시공부문 중 49%(쿨라만 댐 부분), 도화는 설계부문 100%를 분담하기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2. 한라, 금광, 도화와 사이에 위 사업의 설계·시공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194억 8,500만 원, 계약기간 2011. 8. 12.부터 2015. 3. 31.까지로 한 국제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국제건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한라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제2호) 또는 한라 등이 화의, 법정관리, 부도발생 등으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7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국제건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 및 원고의 선금지급기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한편, 한라와 금광은 2011. 8. 12. '원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한라에 대해본건 계약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한라와 금광은 원고에 대해 계약금액의 각자 지급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금지급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선급금의 지급 및 보증

1) 한라는 2011. 8.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할 선급금 3,679,6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4,516,130,000원(위 선급금에 약정이자 연 6%를 가산한 금액), 보증기간 2011. 8. 18.부터 2015. 5. 31.까지로 한 선급금보증계약(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한라는 2011. 8. 19.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선급금 38억 9,700만 원을 신청하면서, 한라에게 3,679,600,000원(지분 94.4%), 도화에게 217,400,000원(지분 5.6%)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한라는 2011. 12.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 19억 4,85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한라에게 1,839,800,000원(지분 94.4%), 도화에게 108,700,000원(지분 5.6%)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한라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선급금 1,839,8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2,222,983,000원(위 선급금에 약정이자 연 6%를 가산한 금액), 보증기간 2011. 12. 12.부터 2015. 5. 31.까지로 한 선급금보증계약(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한라와 도화에 위 신청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보증금 지급청구

1) 한라에 대하여 2012. 11.경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3. 4. 18. 한라에게 이 사건 국제건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한라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 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2) 최종 정산 결과 한라의 기성금이 671,112,943원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6. 5. 피고에게 1차 및 2차 보증에 따른 보증금 4,848,287,057원(= 한라가 수령한 선급금 합계

5,519,400,000원 - 기성금 671,112,943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13. 10. 31. 원고에게 청구금액 중 2,143,787,057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나머지 금액을 재청구하자 피고는 2014. 2. 18. '한라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서 전체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선금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원금 2,704,500,000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한편, 기지급한 2,143,787,057원에 대한 이자 134,295,433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쟁점(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한라의 선급금 반환의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4,848,287,057원(= 한라의 선급금 합계 671,112,943원)에서 기지급 보증금 5,519,400,000원 - 기성금 2,143,878,057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4,490,000원 및 이에 대한 보증금청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한라에 지급한 선급금에는 한라가 대금지급 합의각서(을 제4호증)에 따라 금광의 대리인 자격에서 수령한 금광 몫의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중 한라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한라 몫의 선급금은 2,143,787,057원[= (선급금 5,519,400,000원 × 한라의 지분 51%) - 기성금 671,112,943원]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라에 지급한 선급금에 금광의 몫으로서 한라가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한라는 원고에 대하여 4,848,287,057원(= 선급금 5,519,400,000원 - 기성금 671,112,943원)의 선급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1차 및 2차 보증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 있는 위 4,848,287,057원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

1) 피고 발급의 이 사건 1, 2차 선급금 보증서의 계약금액란에 공동수급체의 전체 계약금액 194억 8,500만 원이 아닌 한라 몫의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9,383,000,000원(= 194억 8,500만 원 × 94.4% × 51%)이 기재되었다(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피고는 이 사건 2015. 6. 24.

준비서면에서 1, 2차 선급금 보증서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과 는 상관없이 오로지 한라만을 주채무자로 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한라만을 주채무자로 하여 한라 몫의 계약금액과 이에 대한 선금지급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한라 신청의 선급금에 관하여 스스로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피고가 보증대상 선급금에 한라가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 금광 몫의 선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3) 이 사건 선금지급기준은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선급금 총액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중 30% 범위 내에서 만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계약당사자들 사이에 금광은 선급금 없이 공사를 수행하고, 전체 계약금액의 30%로 예정된 선급금을 한라와 도화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의는 피고의 보증서 발급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보증한 선급금액이 보증서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점을 볼 때,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 내지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는 변론종결 후 한라가 선급금 신청률을 39.22%로 적용하여 계약금액 9,383,000,000원에 대한 선급금 3,697,600,000원의 선급금 신청서를 2011. 8. 18. 작성한 것을 제출하였다). 주계약이 피고의 보증 후 원고와 한라 사이에 임의적으로 변경되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거나 선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사고 발생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2011. 8. 19. 선급금 신청서에 첨부된 선급금 사용계획서(을 제5호증의 3)상 기재된 '현지조사,

전문가 파견(쿨라만 댐) 107,400,000원'은 도화가 쿨라만 댐의 설계업무를 위하여 신청한 금액이므로 금광의 부담부분과는 무관하다. 금광이 선급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급금 신청액에 금광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2,704,500,000원(= 4,848,287,057원 - 2,143,787,057원) 중 원고가 구하는 2,704,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금 지급청구일인 2013. 6. 5.부터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기간인 7일이 경과한 2013. 6.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보증금 지급청구 다음날인 2013. 6. 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 약관 제8조는 보증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기각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조규현, 판사 김시원, 판사 장민하